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

2007.3.1 제정
2014.3.1 개정
2015.11.1. 일부개정
2019.1.1. 일부개정
<기술사업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에 수반되는 사후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이전계약"이라 함은 본교 소유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본교와 실시자 사이에 체결된 기술실시계약, 지식재산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계약, 기술자문계약, 시설사용계약 등을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의무관계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의 관리를 말한다.

제 3 조 (권리 및 의무) 본교와 실시자는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다만, 기술이전계약 상에 기술이전 계약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연구원"의 귀책에 의한 해약시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교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4 조 (전담부서)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사후관리 업무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및 의료원산학협력단 기술성과파트 기술사업화 분야(이하 "기술사업부"라 한다)가 담당한다. <개정 2019. 1. 1>

② 기술사업부는 제3조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준수 여부, 기술료 관리 및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 보고한다.

제 5 조 (의무불이행시 제재) ①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의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본교 기술개발책임자가 기술이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부가 실시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술개발책임자에 의무의 이행을 통지하고, 소정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개발 책임자를 본교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실시자가 기술이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부가 실시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상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술이전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

제 6 조 (기술료 관리) ① 기술사업부는 실시자의 기업결산회계보고서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 등 기술료 산출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② 기술사업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산출근거에 따라서 실시자에게 경상 기술료의 납부를

요청한다.

제 7 조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기술이전 대가,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의 범위 등 기술이전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사업부는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실시자와 협의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한다.

② 실시자가 이전된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교에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기술사업부는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책임자 및 검토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책임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수령한 기술료를 실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④ 기술사업부는 기술이전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실시자가 모든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연구원의 허락없이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 8 조 (기술료 반환) 중재판정이나 소송 판결에 의해 기술료 반환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주발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료 반환 및 관련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은 지식재산관리규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보상금 배분비율과 동일하게 한다.<개정 2019. 1. 1>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조 개정)